



프랑스의 명예훼손 및 모욕관련 법제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과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 같은 근대입헌주의를 징표하는 여러 문헌속에서 인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 개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 입헌민주주의의 유지형성, ㉢진리에의 도달, ㉣ 사회의 안정과 변화간의 균형을 증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헌법 제21조 제2항).¹⁾

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도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제309조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은 기존의 명예훼손법제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를 위한 비교법적 접근을 위하여 우선 프랑스의 명예훼손법제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512쪽.

II. 프랑스의 명예훼손 및 모욕관련 법제개관

사람의 명예(honneur)나 존경(considération)에 대한 침해인 명예훼손(diffamation)과 모욕(injure)에 대해서 프랑스의 법제는 형법이 아닌 1881년의 출판에 관한 법률²⁾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우 1881년 출판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가 동법 제23조가 정한 방식에 의한 명예훼손

과 모욕을 하는 경우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는 전자적 방식(voie électronique)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또한 1881년의 출판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³⁾

따라서, 프랑스법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881년의 출판에 관한 법률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881년 7월 29일의 출판에 관한 법률》⁴⁾

제23조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연설, 고함 또는 큰소리로 행한 위협을 통해서건,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팔려지거나, 배포되거나, 매매되거나 또는 진열된 문서, 출판물, 도화, 조각, 그림, 상징, 이미지 또는 문서, 발언 및 이미지의 다른 모든 매체에 의해서건, 대중의 시선에 노출된 벽보나 게시물에 의해서건,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중에 대한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서건 직접적으로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에게 전술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자는 그와 같은 교사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경우, 중죄 또는 경죄로 규정되는 행위의 공범자로 처벌된다.

제26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에 의해 공화국 대통령에게 행해진 국가원수모독죄는 4만



2)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3) 헌법재판소(헌),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2, 467-468쪽.

4) <http://www.legifrance.com/>.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은 공화국 대통령의 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에서 적용된다.

제29조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명예 또는 존경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모든 사실의 주장 또는 비난은 명예훼손이다. 직접적 공표 또는 재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을 하는 것은 비록 확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명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라도 연설, 고함, 위협, 문서 또는 출판물의 표현이나, 비난받는 벽보나 게시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경우 처벌된다. 어떤 사실에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경멸 또는 욕설과 같은 모든 모욕적인 표현은 모욕죄이다.

제30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로 법원, 육·해·공군, 행정기관, 행정권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그 지위나 자격에 근거하여 정부 구성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공무원, 공권력의 수탁자 또는 담당자, 국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성직자,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공적인 위임을 받는 사인, 증언에 근거하는 배심원 또는 증인에게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명예훼손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삶과 관련된 명예훼손은 다음 제32조에 의해 규정된다.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출신이나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명예훼손은 1년의 금고와 4만 5,000유로의 벌금 또는 두 개의 형벌 중의 하나에 처한다.

동일한 수단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을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명예훼손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앞의 두 개의 항에 의해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

한 형법 제131-35조⁵⁾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본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해 규정된 단체 또는 사람들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교사가 선행되지 않고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전향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모욕은 6개월의 금고와 2만 2,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모욕은 전향에서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앞의 두 개의 항에서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는 경우에만 사자(死者)의 명예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 5) 프랑스 형법 제131-35조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①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의 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동인으로부터 징수되는 게시 또는 공고의 비용은 동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원은 판결의 전부나 일부, 판결이유나 주문을 공지하는 성명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게시 또는 공고되는 판결의 내용 및 성명의 문언을 결정한다. ③ 판결이나 성명의 게시 또는 공고 내용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 권리승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될 수 없다. ④ 판결의 게시형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장소에서 집행된다. 형사처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게시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게시물이 제거, 은닉 또는 손괴된 경우에는 동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부담으로 새롭게 게시가 행하여진다. ⑤ 판결의 공고형은 관보와 그 이외 하나 이상의 언론출판물이나 시청각매체에 의한다. 공고가 게재되는 언론출판물이나 시청각매체는 법원이 지정하며, 지정을 받은 언론출판기관 또는 시청각기관은 공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법무부(핀), 「프랑스 신형법」 법무부, 1996, 25~26쪽).

포괄적 유증수혜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제13조에서 규정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7조

공무를 담당하는 대사, 전권공사, 외교사절,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신임장을 수여받은 외교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은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III.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881년 7월 29일의 출판에 관한 법률은 제29조 제1항에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명예 또는 존경에 대한 침해가 가하는 모든 사실의 주장 또는 비난”을 명예훼손죄로 규정하며, 제29조 제2항은 “어떤 사실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경멸 또는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모욕죄로 규정하며, 판례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⁶⁾ 따라서, 다음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 명예훼손행위

우선 명예훼손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행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명예훼손의 행위유형을 보자

면 사적으로 인식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알리는 행위, 사적으로 직접 인식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드러난 또는 루머에 의한 사실을 주장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의문을 표시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거나 또는 조건적으로 표현하거나 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또는 암시하는 방법으로 또는 ‘작가의 해석’(interprétation d'écrivain)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며, 1881년 출판법 제29조 제1항은 직접적인 공표 외에 재현(reproduction)을 통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⁷⁾

(2) 피해자

피해자의 확정 문제에 대해서 1881년 출판법 제29조 제1항은 “직접적 공표 또는 재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을 하는 것은 비록 확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명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라도 연설, 고함, 위



6) Michèle-Laure Rassat, *Droit pénal spécial-Infractions des et contre les particuliers*, Paris:Dalloz, 2006, p. 503.

7) 헌법재판소(헌), 앞의 책, 469쪽.

협, 문서 또는 출판물의 표현이나, 비난받는 벽보나 게시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경우 처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내지 거명은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단지 문제되는 언급과 관련된 사회적·직업적 계층에 소속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⁸⁾

(3) 내용의 구체성

명예훼손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비난하거나 언급하는 사실의 구체성이 요구되며, 구체성이 결여된 비난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⁹⁾

(4) 침해행위의 존재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 또는 존경에 대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¹⁰⁾ 명예의 침해란 신실성, 정직성, 도덕성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존경에 대한 침해는 훼손대상피해자가 그의 사적, 공적, 직업적 생활에 있어서 비난을 받아 그 사회적 지위의 평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¹¹⁾

2. 주관적 구성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객관적 구성요건 외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겠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고의성은 추정된다는 입장을 취한다.¹²⁾

IV. 명예훼손의 특수한 경우

1881년 7월 29일의 출판에 관한 법률은 제29조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기본적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과 별도로 특수한 경우의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1. 군대와 행정기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1881년 7월 29일의 출판에 관한 법률은 군대, 행정기관, 행정권에 대한 명예훼손을 동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8) Michèle-Laure Rassat, *op.cit.*, p. 505. 따라서, 어느 집단 전체, 예컨대 수도회나 프리메이슨단, 동성애자들 전체에 대한 비난이나 수의사, 패션모델 등과 같은 어느 직업에 대한 비난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헌법재판소(편), 앞의 책, 470쪽).

9) Michèle-Laure Rassat, *ibid.*, pp. 505-506.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생산품에 대한 비방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한다(헌법재판소(편), 앞의 책, 470쪽).

10) Michèle-Laure Rassat, *ibid.*, pp. 506-507.

11) 정치적, 사회적, 예술적, 상업적 비평을 할 권리와 명예훼손간의 경계가 문제되는데, 비판적인 표현이 그 활동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것이거나 비평을 가져 올 만한 행위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지나친 정도의 비평을 하는 경우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편), 앞의 책, 472~473쪽.

12) Michèle-Laure Rassat, *op.cit.*, pp. 509-511. 헌법재판소(편), 앞의 책, 473~474쪽.

2. 정부구성원,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1881년 7월 29일의 출판에 관한 법률은 또한 제31조에서 정부구성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공권력의 수탁자 또는 담당자 등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위나 자격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는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는 제32조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였다.

3. 출신, 종교, 인종 등에 따른 명예훼손

1881년 7월 29일의 출판에 관한 법률은 제32조에서 사인에 대한 명예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출신, 민족, 국민, 인종, 종교의 가입 여부에 따른 명예훼손과 성, 성적 취향, 불리한 조건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사자(死者)와 관련된 명예훼손

1881년 7월 29일의 출판에 관한 법률은 제34조에서 사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규정을 설치하였는데, 사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자가 아닌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요구하고 있다.

5. 국가원수, 외교사절 등에 대한 명예훼손

1881년 7월 29일의 출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프랑스의 공화국 대통령과 대통령의 특권을 전부 또는 일부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는 프랑스에 주재하는 대사, 전권공사, 그 외 신임장이 부여된 외교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행한 모독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국가원수, 외국의 행정부수반, 외국의 외무장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행한 모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폐지되었다.¹³⁾

V. 공소가능기간의 문제

1881년 7월 29일의 출판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공소는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기산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판례 역시 지방법원, 고등법원, 파기원이 각각



13)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52 JORF 10 mars 2004.

다른 입장을 피력함으로써,¹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소가능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상원과 국민의회의 제1독회를 통과한 상황에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향후 상원과 국민의회의 토의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¹⁵⁾

VI. 맺음말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인격을 발현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유이며,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은 이와 같은 기능을 더욱더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실세계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법제를 간단히 살펴보았으며, 전통적 명예훼손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1881년 7월 29일의 출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과 그 법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없는 이와 같은 프랑스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제조사가 과연 우리의 법제 개선을 위해 얼마만큼의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 동 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4) 지방법원은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개된 시점을, 고등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삭제된 날을, 파기원은 1881년의 출판에 관한 법률의 문구에 충실하게 공개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았다. 헌법재판소(핀), 앞의 책, 479~480쪽 참조.
- 15) PROPOSITION DE LOI ADOPTÉE PAR LE SÉNAT, tendant à allonger le délai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pour les diffamations, injures ou provocations commises par l'intermédiaire d'Internet.